

의안 번호	1533	【울산광역시 중구 수소경제 선도 및 육성 조례안】 심사 보고서
------------------	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9. 3. 14.(목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3. 14.(목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3. 26.(화)

2. 제안설명 요지 (노세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제3호 차목에서 정한 “지역산업 육성 · 지원” 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
- 수소산업의 기반 조성과 선점, 체계적 육성을 통하여 수소경제 산업분야의 핵심역량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함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1조~안 제3조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
- 안 제4조~안 제7조 수소경제 선도 발전계획의 수립,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, 전문 인력 양성, 사업의 시행 및 지원
- 안 제8조~안 제13조 수소산업 육성 추진위원회, 위원회 기능 · 직무 · 운영, 위원의 해촉, 수당 등
- 안 제14조 시행규칙 및 부칙

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제3호 차목(지역산업 육성 · 지원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유경달)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서
- 수소산업 기반 조성과 선점, 체계적 육성을 통하여 수소경제 산업분야의 핵심역량 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음.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 4. 6., 2007. 5. 17., 2009. 12. 29., 2011. 7. 14., 2017. 4. 18.>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 · 위치 및 구역의 조정

나. 조례 · 규칙의 제정 · 개정 · 폐지 및 그 운영 · 관리

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
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 · 감독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 · 후생복지 및 교육

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
사. 예산의 편성 ·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
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
자. 공유재산관리(公有財產管理)

차.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

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· 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 · 아동 · 심신장애인 ·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- 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· 운영
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- 사. 묘지 · 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 · 관리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- 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3. 농림 · 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
- 가. 소류지(小溜池) · 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나. 농산물 · 임산물 · 축산물 ·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
 - 다. 농업자재의 관리
 - 라. 복합영농의 운영 · 지도
 - 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 · 지도
 - 바. 농가 부업의 장려
 - 사. 공유림 관리
 - 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 - 자. 가축전염병 예방
 - 차. 지역산업의 육성 · 지원
 - 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 - 타. 중소기업의 육성
 -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· 지원
 - 하.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- ### 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· 관리에 관한 사무
- 가. 지역개발사업
 - 나. 지방 토목 · 건설사업의 시행
 - 다. 도시계획사업의 시행

- 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군도의 신설 · 개수(改修) 및 유지
- 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- 바.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- 사. 자연보호활동
- 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- 자. 상수도 ·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- 차.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카. 도립공원 · 군립공원 및 도시공원, 녹지 등 관광 ·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타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- 파. 주차장 ·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하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- 거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- 5. 교육 · 체육 · 문화 ·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 - 가. 유아원 · 유치원 ·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· 운영 · 지도
 - 나. 도서관 · 운동장 · 광장 · 체육관 · 박물관 · 공연장 · 미술관 · 음악당 등 공공교육 · 체육 ·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 · 보존 및 관리
 - 라. 지방문화 · 예술의 진흥
 - 마. 지방문화 · 예술단체의 육성
- 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
 - 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· 감독
 - 나. 지역의 화재예방 · 경계 · 진압 · 조사 및 구조 · 구급